



「2021년 지방직 9급 공무원」 지방세법(A형) 기출문제 해설(1)

| 김용민 교수 | 박문각남부고시학원

— [총평] —

안녕하세요. 박문각 세법 교수 김용민입니다. 올해 지방직 지방세법은 전반적으로 2020년에 비하여 난이도가 다소 어렵게 출제되었습니다. 문제의 내용이 어려운부분이 많았다기보다는 문제의 패턴이 어려운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. “옳지 않은 것은?”이라고 질문을 하는 것보다 “옳은 것은?”으로 질문하는 것이 사실 문제의 패턴이 어렵습니다. 그러므로 꼼꼼하게 공부한 수험생의 경우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을 수 있으나 아직 공부량이 조금 부족한 경우에는 체감난이도는 높게 느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. 시험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

— [기출문제 및 해설] —

01.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 부과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납부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.
- ② 공유물(공동주택의 공유물은 제외한다),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.
- ③ 법인이 해산할 때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남은 재산을 분배하여 채납처분을 집행하더라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 청산인은 부족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.
- ④ 사업양수인은 양도일 이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총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.

[정답] ② [난이도] 중

[해설]

①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.

③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(引渡)하여, 그 법인에 대하여 채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청산인과 남은 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.

이 경우 제2차 납세의무는 청산인에게는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, 남은 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에게는 각자가 분배·인도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.

④ 사업의 양도·양수가 있는 경우 그 사업에 관하여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총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 한도 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.

02. 지방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대표자가 없으면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지방세를 징수하기 유리한 자에게만 송달하여야 한다.
- ②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.
- ③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사전 반대한 경우가 아니면 전자송달의 방식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.
- ④ 서류를 송달받을 자가 주소, 거소, 사무소 및 영업소 외의 다른 장소를 송달받을 장소로 요청한 경우 그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.

[정답] ② [난이도] 하

[해설]

①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, 대표자가 없으면 연대납세의무자 중 지방세를 징수하기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. 다만,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.

③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신청한 경우에 적용된다.

④ 서류를 송달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였을 때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.

03.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상 지방세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재산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에 성립하며,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.

-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.
- ③ 환급가산금을 포함한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.
- ④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[정답] ③ [난이도] 하

[해설]

③ 지방세환급금(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)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.

04. 지방세징수법상 공유재산의 공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공유자가 공매재산인 공유물의 지분을 우선매수 하였다든 신고를 한 경우에는 매각 결정 기일이 지날 때까지 공매보증금의 제공은 필요하지 않다.
- ② 공매재산이 압류된 부부공유의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체납자의 배우자는 우선매수권을 가지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.
- ③ 체납자의 배우자는 공매재산이 압류된 부부공유의 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매각대금 중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.
- ④ 우선매수 신고를 한 공유자에게 우선매각결정을 한 후에 그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재공매를 하여야 한다.

[정답] ③ [난이도] 상

[해설]

①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는 매각결정 기일 전까지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매각예정 가격 이상인 최고입찰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.

② 체납자의 배우자는 공매재산이 압류된 부부공유의 동산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공매재산을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결정 후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매각예정가격 이상의 최고액 입찰자에게 다시 매각결정을 할 수 있다.

05. 지방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범칙사건조사를 하는 경우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②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.
- ③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은 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
- ④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.

[정답] ③ [난이도] 중

[해설]

①, ② 과세전적부심사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

㉠ 범칙사건조사를 하는 경우
㉡ 세무조사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
㉢ 그 밖에 법령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④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

㉠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. 다만,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㉡ 범칙사건조사에 따른 통고처분
㉢ 「감사원법」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
㉣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
㉤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

* 해당 강의는 박문각온라인(www.pmg.co.kr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